

보도시점 2026. 7. 20.(월) 10:00 배포 2026. 7. 20.(월) 7:30

「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」 신규 운영기관 공모

- 개인정보위, 7월 20일(월)부터 9월 4일(금)까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공모

개인정보보호위원회(위원장 송경희, 이하 ‘개인정보위’)는 ‘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’(이하 ‘이노베이션 존’) 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**7월 20일(월)부터 9월4일(금)까지** 진행한다.

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. 연구자와 기업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24년 도입하였으며, 지금까지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총 8곳*이다.

* (운영기관) 국가데이터처(구.통계청), 국립암센터, 한국사회보장정보원, 더존비즈온, 한국도로공사, 한국교육학술정보원, 광주테크노파크,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(개소준비중)

이노베이션 존은 “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.”라는 ‘제로 트러스트(Zero Trust)’ 원칙에 따라 사전·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전체를 관리하고, ▲4인 이상의 담당 전문 조직, ▲다중 인증 방식, ▲실시간 화면 녹화 등을 통해 데이터 처리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높였다.

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연구 공간에서는 시도가 어려웠던 ▲가명처리 수준 완화, ▲다양한 결합 키 활용, ▲지속·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 등을 수행할 수 있다.

또한 ▲빅데이터(영상·이미지 등) 표본 검사, ▲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(PET) 실증연구 등도 가능해, 작년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「새정부 경제성장 전략」의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된 바 있다.

이번 지정 공모는 국비지원 부문과 자체구축 부문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, 국비지원 부문(공공기관만 지원 가능)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이노베이션 존 구축·운영을 위해 3.7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(보안장비·SW 등 인프라 구축비)한다.

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9월 4일(금)까지 개인정보위에 지정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. 기존 결합전문기관, 데이터 안심구역,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.

※ 제출처 :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(pipcdata@korea.kr)

공모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누리집(www.pipc.go.kr)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(www.kisa.or.kr),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(www.dataprivacy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개인정보정책국 데이터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 원 세 연	(02-2100-3071)
		담당자	사무관 소 성 은	(02-2100-3074)
<공동>	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활용팀	책임자	팀 장 이 상 걸	(061-820-2910)
		담당자	주 임 김 예 진	(061-820-2915)



□ 사업목적

- 제로트러스트*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, 강화된 안전성에 비례하여 개인정보의 유연한 활용을 지원

* 제로트러스트(Zero Trust): “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”는 원칙을 전제로, 내부자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데이터 처리과정 전체 검증을 목표로 하는 보안모델

□ 사업내용

① 개인정보(가명정보)의 유연한 활용 지원

- (가명처리 수준 완화) 환경적 안전성 강화 수준에 비례하여,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여 가명처리 후 분석 가능
- (비정형데이터 활용) 비정형(영상, 이미지, 텍스트 등) 빅데이터에 대해 전문심의위가 검증한 가명처리 SW 적용 및 샘플링 검사 후 활용 허용

→ 불필요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시켜 양질의 데이터 확보·활용 가능

- (가명정보 장기보관 및 재사용) AI 연구개발 등 지속적·반복적인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* 가능

※ 전제조건: ❶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서 정한 목적 내 활용, ❷원 보유기관과의 협의, ❸전문심의위원회 심의, ❹(필요시) 처리 목적·환경에 따른 추가 가명처리

→ AI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·비용 대폭 절감 가능

②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(PET*) 실증 지원

* PET(Privacy Enhancing Technology): 동형암호, 합성데이터 등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가명·익명처리, 결합 등 제도적용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함

- 기존 제도적용이 모호한 PET의 경우 전문심의위원회의 실증 계획을 사전 검증하여 해당 PET를 적용한 개인정보 처리 허용

→ 프라이버시 우려, 모호한 규제적용 등으로 막혀있던 신기술 연구개발 가능